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4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문짝의 강판이 굴곡, 요철 또는 엠보에 의한 디자인의 차이는 각각 다른 시험체로 보는 것인지?
2. 강판의 재질이 틀러지면 다른 시험체로 보는데, 강판의 재질 및 주요부품(손잡이, Door Hinge, 개스킷 등)이 동일하고 제조 회사가 상이한 경우에는 다른 시험체로 보는 것인지?
3. 성능을 인정받은 외여단이 방화문(1000×2100)으로 재질이 같은 쌍여단이 방화문(총 크기 : 2000×2100(각각 1000×2100/1000×2100))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4. 기준 제8조 제3항의 “크기가 작은 경우”라고 기준한 것은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A 각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선(방재시험연구원 방내화팀 왕남웅 차장, 031-887-6683)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모든 사항이 동일하면 단순한 절곡의 경우 동일한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제작사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3. 외여단이문과 양여단이문은 동일한 구조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성능인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크기가 작은 경우”란 면적기준이 아닌 인정받은 방화문의 너비보다 작은 경우, 높이 보다 작은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 전기실, 통신실 등에 교차회로 적용시 감지기를 어떻게 구성하는게 적합한가요?

A 화재안전기준에는 교차회로 구성 시 감지기 구성의 종류에 대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실 및 통신실은 훈소의 우려가 있는 장소로 화재안전기준에서 연기식 감지기를 적용성 있는 감지기로 하고 있어 연기식-연기식으로 구성하여도 문제는 없으나 오동작의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차회로 구성은 오동작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감지기(연기식-차동식)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 공동주택 건축설비 사항 중 실내와 콘크리트벽 두께(120mm)으로 구획된 PIPE 샤프트 내부에서 급수 및 온수공급관이 콘크리트 슬라브 판을 상부로 관통하는 경우 배관과 콘크리트 슬라브판 관통된 틈새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 제14조 제2항에서 인정한 재료로 밀실하게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운 후 급수배관 및 온수배관고정을 등 규칙 제6조(불연재료)에서 규정한 알루미늄 다이게스팅 재료로 제작된 급수관 및 온수배관 고정용 고정틀(판)로 시공할 경우 제14조에서 규정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적합여부가 궁금합니다.

A 상기 질문에서 PIPE 샤프트 내 급수배관 및 온수배관의 수직관통부 주위 개구부를 내화 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밀폐하고, 밀폐된 개구부와는 관계없는 부분에 불연재료의 고정틀을 설치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장소(전기실 등)에 덕트 관통시 통상 약제가 덕트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PRD를 설치합니다. 이런 경우 PRD외 방화댐퍼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PRD는 그 목적이 소화약제가 개구부에 의해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방화댐퍼는 화재의 연소확대 방지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덕트 관통부위가 방화구획 선상이라면 방화 댐퍼를 추가로 설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PRD가 방화댐퍼로써의 성능도 지니고 있고, PRD자체의 기능과 덕트과 관통하는 실(가스계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실)의 화재 시에도 자동으로 폐쇄되는 기능이 있다면 추가설치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연면적 531m²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인 5개 건물인데, 1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건물 뒤편에 샌드위치 판넬로 29m² 증축을 했습니다. 외벽의 한 부분을 콘크리트 건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전체 건물을 다 가입하려고 하는데, 건물 급수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상기 질의내용에서 증축된 부분이 기존부분과 완전 구획된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구조급수 적용이 가능하고, 구획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보험요율서 복합구조건물의 정의에 따라 열급구조의 면적이 전체 바닥면적의 약 5% 이므로 전체 건물구조급수는 1급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도면과 함께 담당자(고객서비스팀 방정익, 02-3780-03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